

2009. 05. 25(월)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 목 차 】

1.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안번호 제2009 - 15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2. 개정이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법률 제9468호, 2009.2.12)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도록 반영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민투표법」
- 나.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을 구체화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군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2조제4항 신설).

다. 「주민투표법」에서 개정된 주민투표권 연령에 맞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함(안 제3조).

○ 주민투표권 연령 조정 : 20세 이상 → 19세 이상

라.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마. 「주민투표법」 등 상위법령과 개정 조례안에 맞도록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및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2조, 제5조, 제9조

○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80조,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09. 3. 9 ~ 3. 2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12>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조(주민투표권) ①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 2004. 7.30] [법률 제7124호, 2004. 1.29, 제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폐지)·분합(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 2. 삭제 <2009.2.12>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 (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4>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④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선거공약서)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2. 제안이유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거창 군민상의 수상자 자격, 후보자의 추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상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상자를 전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영예를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민상 시상 시기는 매년 9월 25일 군민의 날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신설).
- 나. 시상방법으로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신설, 제8조 삭제).

- 다.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민상을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 라.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 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자격요건
 - 현행 :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에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변경 :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용어변경
 - 본적지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마. 군민상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재 추천에 관한 제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삭제).
- 관할 읍·면장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 ⇒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3년 이내 재 추천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 바. 후보자 추천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공고는 연 1회로 하되, 군민의 날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사.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아.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군민상 수상자의 심사선정 기능에 군민상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함
- 자. 위원회의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차. 위원회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카.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순화함.

4. 법적근거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2009. 4. 7 ~ 4.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2조(시상 및 시상시기)에서 군민상의 시상 시기를 군민의 날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현행조례 제8조에서 군민상 시상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기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중 표창·포상을 할 수는 있으나 부상의 수여는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부상수여 규정을 삭제하고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상은 표창패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제3조(시상대상)의 개정내용은 군민상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 규정이며, 기타 조문 개정내용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크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 삭제 <2004.3.12>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2. 개정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문장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요금제기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수입증지의 종류는 기본 12종으로 하되 요금제기에 따라 인영되는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하고, 증지의 모양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군 심벌마크)를 추가함.(안 제7조 및 별표 1)
- 다. 직원복지회가 증지판매 계약을 하고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 위치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5항).

라. 증지판매소는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을 도모함(안 제13조).

마.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 납입기한
 - 금고 소재지 : 증지를 판매한 다음 날까지
 - 금고 소재지 외의 곳 : 5일 내

- 전자민원창구에 따라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증지대금 납입기한
 - 전자지불대행업체로부터 해당 대금을 정산받는 날의 다음 날까지

바. 증지는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나 요금계기에 따라 인영된 증지는 소인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단서).

사. 그 밖에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2009. 3. 6 ~ 3. 2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증지 요금제기의 사용)에서 수입증지 요금제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는 수입증지의 도안 모양에 거창군 심벌마크를 추가하였고,
 - 안 제13조(판매소의 위치)에서는 증지판매소를 민원봉사과 등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이 경우 수입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이 경우 수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귀속됩니다.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1999.1.29>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4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개정 1999.1.29>) ① 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② 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③ 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①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제7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 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제9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발행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입인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①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1. 체신관서에 대한 공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② 삭제<1999.5.10>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여건 및 납부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와 같다. [전문개정 2004.7.13]

제5조 삭제<1999.5.10>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1.28, 2004.7.13>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6. 삭제<2000.11.28>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9.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1999.5.10]

제7조(판매인의 요건) 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7.21>

-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거나 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4. 공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 7. 공무원이 집달관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수료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6.8, 1999.5.10>

② 판매인이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하도록 이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③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판매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

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에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신설 1993.6.8, 1999.5.10>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3.6.8>

1.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의 관리에 소요된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할인율) 공급기관이 판매인에게 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3.6.8]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이하 "수입인지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6.8, 1999.5.10>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6.8, 1994.12.23, 1999.5.10, 2008.2.29>

제14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1. 수입인지수급 및 판매명세서
2. 수입인지대금납입명세서
3.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현황

4. 수입인지출납·보관자현황일람표

[전문개정 1993.6.8]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10, 2008.2.29>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0.11.28>

④ 삭제<1993.6.8>

제16조(수입인지출납·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 출납보관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 「수입인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인계·인수서에 의한다. <개정 2004.10.8>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8>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10.8]

제4조(판매기관의 게시사항) 수입인지판매기관은 그 판매하는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판매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인지판매인의 의무) 수입인지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비치할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수입인지판매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표지판을 게시할 것
5. 수입인지판매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2일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2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의안번호 제2009 - 18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3.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422호, 2009.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목적세에 대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안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한 것을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 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제92조 및 부칙 제2조).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50%→60%, 토지 및 건축물은 65%→70%로 상향 결정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되, 2010년 법률개정 전까지 2009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만 적용
 - 세율인하 : 1,000분의 1.5 → 1,000분의 1.4(0.01%p 인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8조 및 제237조
-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9. 4. 24 ~ 5. 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09. 2. 6)에 따라 주택 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국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행정자치부의 권고 기준에 의거 목적세 부과분에 대한 전국적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세를 0.15% → 0.14%로 현행 대비 0.01퍼센트씩 인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7조(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5. 1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9. 05. 15.

2. 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은 중단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강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의 뜻을 변경함 (안 제3조제4호).
-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 : 셋째아이 이상 자녀 → 둘째아이 이상 자녀

- 나.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따른 용어의 뜻을 신설함(안 제3조제9호).
-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 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50만원 이내 지원 조항과 이의 지원대상 자격,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 라.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을 변경함(안 제11조, 제12조).
- 당초 :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20만원씩 정액 지급
 - 변경 : 둘째아이인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만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셋째아이 이상은 현행과 같음
- 마.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내용과 업무관장 부서를 신설함(안 제20조제7호).
-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 (1010추진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0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모자보건법」 제2조,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115백만원)

다. 입법예고(2009. 3. 24 ~ 4.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급은 중단하고 영유아양육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23조 (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9.2.8, 2005.12.7>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유아"라 함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안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3.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4.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등에 관한 사항